

반상회보

[2021년 2월 정례반상회 개요]

- 일 시 : 2021. 2. 25.(목)
- 지 역 : 293개 마을, 612개 반
- 방 법 : 홈페이지 게재



강진군
(총무과)

| 연번 | 제 목 | 담 당 | 페이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《 강진군 협조 . 공지사항 》 | | |
| 1 | 마늘 양파 의무거출금 납부 및 경작 신고 안내 | 친환경농업과 | 3 |
| 2 | 논활용[논이모작]직접 직불금 신청 | | 4 |
| 3 | 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인증사업 안내 | | 5 |
| 4 | 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안내 | | 6 |
| 5 |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| | 7 |
| 6 |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| | 환경축산과 |
| 7 |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| 10 | |
| 8 |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| 11 | |
| 9 |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계도기간 종료 임박 | 12 | |
| 10 | 친환경축산물 인증혜택 알림 | 13 | |
| 11 |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및 절차 안내 | 14 | |
| 12 |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온라인 실시 | 15 | |
| 13 |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| 16 | |
| 14 | 한우 사육농가 출하 전 이행사항 | 17 | |
| 15 | 가축질병 예방백신 접종 철저 | 18 | |
| 16 |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| 19 | |
| 17 | AI 정확히 알면 두렵지 않아요! | 해양산림과 | |
| 18 | 2021년 봄철 대형 산불예방 철저 | | 22 |
| 19 | 깨끗한 강진만 만들기 협조 | | 23 |
| 20 | 낙시어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안내 | 민원봉사과 | 24 |
| 21 |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안내 | | 25 |
| 22 | 주소 정정 및 주소일괄변경 신청 안내 | 세무회계과 | 26 |
| 23 | 강진군 마을세무사 운영 | | 27 |
| 24 |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알림 | |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25 |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| 보건소 | 28 | |
| 26 |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안내 | | | |
| 27 |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안내 | | 29 | |
| 28 |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| | | |
| 29 |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| | 30 | |
| 30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| | | |
| 31 |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안내 | | 31 | |
| 32 |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| | | |
| 33 | 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안내 | | 32 | |
| 34 | B형·C형 간염 무료 검진 안내 | | 33 | |
| 35 | 마을회관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 | | | |
| 36 |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안내 | | 34 | |
| 37 |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| | 35 | |
| 38 |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홍보 협조 | | 36 | |
| 39 | 무료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안내 | | 37 | |
| 《 정부 협조 . 공지사항 》 | | | | |
| 40 | 저소득층 교육급여·교육비 신청하세요! | | 교육부 | 38 |
| 41 |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| | | 39 |
| 42 |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 합시다 | | 행정안전부 | 40 |
| 43 |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. |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 | 41 | |
| 44 | 에너지바우처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! | 산업통산자원부 | 42 | |
| 45 | 반듯한 경계! 반듯한 나의 땅! 지적재조사사업! | 토지관리과 | 43 | |
| 46 | 도민 안전보험 안내 | 도민안전실 | 44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마늘·양파 의무거출금 납부 및 경작 신고 안내

◇ 마늘·양파 의무자조금 설치에 따른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경작신고제 도입

□ 마늘·양파 의무거출금 납부

- 고지서 우편발송 일정(예정) : 2021. 2. 22.(월)
- 발송대상 : 마늘·양파별 1,000㎡ 이상 재배 농가
- 거출금 변경 : 경작 신고와 병행하여 추진
 - ※ 경영체 등록면적과 실 경작면적이 다른 경우 거출금 변경 됨.
(거출금은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기준으로 산출)
- 의무자조금 주요 사업 : 소비촉진 홍보, 수급안정, 유통구조 개선 등
 - ※ 미납 시 정부·농협을 통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및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.

□ 마늘·양파 경작 신고

- 마늘·양파 의무경작신고제 도입 : 2021. 2. 1.부터
- 경작신고 기간 : **2021. 3. 31.(수)까지**
- 경작신고 대상 : **마늘·양파 재배 농가 전체**
(총 재배면적 1,000㎡ 미만 농가는 임의 신고 대상)
- 접수처 : 읍·면사무소
- 경작신고서 작성요령
 -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우선 작성
 - 한 필지에 하계, 동계 작물을 구분하여 2인이 따로 등록 가능

문의처 :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☎ 430-3124

논활용(논이모작)직접 직불금 신청

논을 활용·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·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

□ 사업내용

- 신청기한 : 2021. 2. 1.(월) ~ 3. 12.(금)
- 대상농지
 -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
 -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농업·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
- 신청자격
 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천㎡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2020년 10월에서 2021년 6월까지 논활용(논이모작)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(농업법인)
 - ※ 농업 외 종합소득이 3,700만원 이상 제외
- 지급대상 품목
 - 겉보리, 쌀보리, 맥주보리, 밀, 호밀, 귀리, 감자 등
 - 사료 작물 및 목초류 해당 품목
- 지급단가 및 지급 상한
 - 1㎡당 50원
 - 지급상한 :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
- 지급시기 : 2021년 10월 중

문의처 :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☎ 430-3113

농산물우수관리제도(GAP) 인증 사업 안내

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 제도란?

농산물의 생산,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단계까지 농업환경(토양, 수질 등)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(농약, 세균, 중금속 등)을 중점관리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

-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(GAP) : Good Agricultural Practices -

농산물 우수관리(GAP) 인증 방침(중앙정부)

-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개선 계획 추진에 따른 GAP 인증 농가 확대
- 저온저장고 지원사업, 농기계 지원사업,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각종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시 GAP 인증농가 우선순위 부여

지원대상

- 안전성 검사비 지원(토양, 용수,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)
 -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GAP 인증을 받은자
-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(인증심사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)
 - GAP 인증 받은 농가, 생산자 단체

GAP 인증신청방법

- 신청시기 : 농산물 생육기간의 2/3가 경과되기 전에 신청
- 신청기관 :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증기관
- 인증방법 :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(생산자단체)는 구비서류 작성 후 GAP 인증기관에 신청
 - 인증 추진 농가가 준비할 서류
 - GAP 인증신청서 및 사업관리계획서 1부 작성
 - 인증 신청할 농가별로 영농일지 작성
 - 신청농가 내역(농가명, 필지 지번, 면적 등) 작성

인증비용 지원방법

- GAP인증을 위한 인증수수료, 토양, 용수,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 농가가 우선 부담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 → 서류 검토 후 인증비용 지급

문의처 :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☎ 430-3137

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안내

<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(PLS)이란? >

*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, PLS)

-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,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(0.01mg/kg)으로 관리하는 제도 (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 전면 시행)

| 기준 설정여부 | PLS 시행 전 | PLS 시행 후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정 | 기준에 따라 적용 | 기준에 따라 적용 (시행 전과 동일) |
| 미설정 |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| 일률기준(0.01mg/kg, ppm) 적용 |

* PLS 적용 예시 :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(Buprofezin)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.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

- (시행 전) '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'인 0.05ppm 이내로 검출되어 '적합'
- (시행 후) 일률기준(0.01ppm) 적용, '부적합'으로 판정(폐기 또는 출하연기)

□ 부적합 농산물 조치사항

| 조사 단계 | 부적합 조치 근거 | 조치 내용 |
|-------|---|--|
| 생산단계 |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제1항 · 생산 단계 안전 기준 위반 | 폐기, 출하 연기, 용도 전환 부적합 농가 교육 |
| | 농약관리법 제40조 |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| 유통단계 | 식품위생법 제72조 | 담당 공무원이 위해식품의 압류, 폐기 생산 단계 대상 농작물 재조사 |
| | 농약관리법 제40조 |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
□ 제도 강화에 따른 지켜야 할 핵심사항

- 농약 구입 시 포장지 라벨에 적혀 있는 권고사항, 주의사항, 취급제한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기
- 농약 사용 시 표준 희석 배수 및 정량 살포하도록 하고, 품목명이 엔도설판 유제, 메토밀, 디클로르보스 유제 등 고독성 농약은 사용 금지

문의처 :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식품산업팀 ☎ 430-3137

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

□ 목 적

- 농업 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,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 및 계획 영농에 애로
-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「농업인 월급제」를 시행

□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(1) 주요변경내용

- 월 최대 지급액 상향 : 200만원 → 250만원
 -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급 상한선을 확대 조정
 - ※ 최대 지급액 한도 내에서 지역농협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

(2)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1 ~ 12월
 - 지급기간 : 2021. 4 ~ 10월(7개월)
 - * 최대 8개월 분 지급. 4월은 2개월분(3월분 소급) 지급하되 분기 지급 시 3개월치 지급(3~5월분)
 - * 3월까지 신청한 농가는 4. 10. 지급토록 조치
- 개인한도 : 200천원 ~ 2,500천원 * 비 외의 품목은 월 지급 하한액 300천원
 - (상한) 20,000천원 = 2,500천원 × 최대 8개월
 - (하한) 1,600천원 = 200천원 × 최대 8개월
- 지 급 액 : 농협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% 범위내에서 고정지급
- 지원내용 :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*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
- 지원이율 : 5%이내(5%범위 내에서 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하여야 함.)

(3) 지원 대상

-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
-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(통합RPC)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

※ 신청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권장

-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액을 보전토록 해 기상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 해소

(4) 품목별 기준면적

| 품 목 | 기준면적 | 품 목 | 기준면적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벼 | 3,500m ² | 포도 | 780m ² |
| 양파 | 1,000m ² | 마늘 | 660m ² |
| 배 | 800m ² | 콩 | 3,000m ² |
| 감 | 1,300m ² | 사과 | 580m ² |
| 딸기 | 620m ² | | |

(5) 지급기간 및 정산시기

| 품목 | 신청기한 | 지급액(월) | 월급 지급기간 | 이자 정산시기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벼 | 4.20. | 200~2,500천원 | 2021.4.10.~10.10.(7개월) | 2021.12.9.까지 |
| 포도 | 4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4.10.~ 7.10.(4개월) | 2021.10.9.까지 |
| 양파 | 4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4.10.~ 5.10.(2개월) | 2021. 8.9.까지 |
| 마늘 | 4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4.10.~ 6.10.(3개월) | 2021. 9.9.까지 |
| 배 | 4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4.10.~ 9.10.(6개월) | 2021.12.9.까지 |
| 콩 | 6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7.10.~ 9.10.(3개월) | 2021.12.9.까지 |
| 감 | 4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4.10.~10.10.(7개월) | 익년도 1.9.까지 |
| 사과 | 4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5.10.~11.10.(7개월) | 익년도 3.9.까지 |
| 딸기 | 5.20. | 300~2,500천원 | 2021.6.10.~12.10.(7개월) | 익년도 3.9.까지 |

□ 이자 청구기간은 월급여 지급한 다음날부터 품목별 이자 정산시기까지로 하되 이자 정산시기 전에 농협에 약정 수매물량을 완납한 경우 그 시점까지를 이자지급기간으로 산정

예시 1) 벼 재배 A농가 : 월급액을 4월 10일 지급하여 12월 9일 약정물량을 완납할 경우
(이자 계산일 : 4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/ 242일)

예시 2) 벼 재배 B농가 : 월급액을 4월 10일 지급하여 이자 정산시기 전 11월 5일에 약정물량을 완납할 경우(이자 계산일 : 4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/ 208일)

※ 월급 지급일이 휴일(토,일)인 경우 금요일 지급,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월급여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이자시기 기산

□ 상기 품목 외 기타 품목이 있을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자체 산정하여 추진

문의처 :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농정팀 ☎ 430-3103

전기자동차 보급사업

- 접수기간 : 2021. 2. 17. ~ 2021. 3. 5.
- 보급대수 : 승용 25대, 화물 15대
 - ※ 2021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.
- 신청방법
 - 전기차 구매 계약 후,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 대리점에서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(<https://www.ev.or.kr>)에 신청서 접수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

- 접수기간 : 2021. 2. 22. ~ 3. 5.
 -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및 주말, 휴일 제외)
- 사업물량 : 10대
- 지원금액 : LPG 신차 구입 시 400만원 정액 지원
- 지원대상
 - 공고일로부터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 등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환경지도팀 ☎ 430-3302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

- **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함.**

□ 지원대상

-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), 개인 또는 법인 1인 1대

□ 접수기간 : 2021. 2. 17.(수) ~ 2021. 3. 4.(목)

-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및 주말, 휴일 제외)
※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예정

□ 접수장소 : 강진군 소유자 거주지 읍·면 사무소 방문접수

- ※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지참

□ 지원대수 : 약 300대(사업비 소진시까지)

-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 변동 가능
※ 우선지원 대상
 -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차량
 -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
 - 총중량 3.5톤이상 차량, '02년 이전 제작·출고 차량

□ 지원금액

-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

문의처 : 읍·면사무소 및 강진군 환경축산과 환경지도팀 ☎ 430-3302

퇴비 부속도 검사제도 계도기간 종료 임박

퇴비 부속도 검사제도 정상 시행('20.3.25.) 후 1년간 부여한 계도기간('21.3.24.) 종료에 따라 부속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.

□ 검사대상 : 허가·신고 대상 축산농가(신고 규모 미만 제외)

□ 검사기준

- (신고규모) 1,500m²미만 배출시설 : 부속증기
- (허가규모) 1,500m²이상 배출시설 : 부속후기 or 부속완료

□ 검사주기

- (신고규모) 1,500m²미만 배출시설 : 연 1회
- (허가규모) 1,500m²이상 배출시설 : 연 2회(6개월 1회)
- 검사기관 : 강진군 농업기술센터

□ 과태료 기준

| 위반사항(배출시설) | 행정처분 | |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| 1차 | 2차 | 3차 | |
| 1) 부속도 부적합 | | | | |
| - 허가 규모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|
| - 신고 규모 | 50만원 | 70만원 | 100만원 | |
| 2) 검사주기 | | | | |
| - 허가 규모(6개월마다) | 50만원 | 70만원 | 100만원 | |
| - 신고 규모(1년마다) | 30만원 | 50만원 | 70만원 | |

※ “허가규모” 농가는 “6개월에 1회”, “신고규모” 농가는 “1년에 1회”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“허가규모” 농가 중 ‘20년 1회 검사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2회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나 “허가, 신고규모” 농가 중 지금까지 퇴비 부속도 검사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‘21. 3. 10.(수)까지 반드시 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☎ 430-3612

친환경축산물 인증혜택 알림

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·공급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한 축산 실천

- 지원축종 : 한우, 젓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염소, 메추리 등
- 지원대상 :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(농업법인) 및 축협
- 사업내용 : 인증비 및 장려금 지원
 -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
 - 최초 인증, 재 인증 시 지원
 - 출하가축(생산물) 장려금
 -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 보전
 -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
 -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
- 지원절차
 - 인증신청(농가) → 접수 → 검토 → 심사 → 인증(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, 민간 인증업체) → 인증비 지원(군)
- 지원한도
 -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: 2백만 원 이내 / 호
 - 인증 신청 후 검사 부적합으로 탈락한 경우 : 시료검사비 100%지원(1회)
 - 출하가축(생산물) 장려금 지원 : 1백만 원 이내 / 호
 -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: 2백만 원 / 호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☎ 430-3612

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및 절차 안내



깨끗한 축산농장이란 무엇인가요?

축산농가가 차기주도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입니다.



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각 시·군·구에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
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안내

사업
내용

축종별 지정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·컨설팅·사후관리

신청
대상

축산업허가를 받은 축산농가
 ※ 축산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
 ※ 지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나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, 약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

신청
기간

1월 ~ 12월
(연중 평가 및 지정)

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접수 및 지정 절차

- 01 신청 접수 (시·군·구) → 02 신청서류심사 (시·군·구)
- 03 현장평가 (시·군·구) → 04 평가결과 집계 검증의뢰(시·도)
- 05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→ 06 검증결과 검토 제출 (시·도)
- 07 농식품부 검토 축산환경관리원 협조 → 08 농식품부 지정

깨끗한 축산농장 지원내용

스스로 농장을 깨끗이 관리하는 농가 지원

- 1 (농식품부) 약취저감시설 등 깨끗한 축산농장지원사업 대상지 우선 선정
- 2 (지자체) 약취저감제 공급 등 지자체 자체 사업 우선 지원
- 3 (컨설팅) 축산환경관리원은 컨설팅·사후관리 등 지원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☎ 430-3612

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온라인 실시

- 추진방향 : 코로나19 및 고병원성 A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중단 및 전 과정 온라인교육으로 대체
- 기 간 : '20. 7. 9. ~ 집합교육 재개 시까지
- 대 상
 - 축산업 신규 허가자 : 24시간
 - 축산업 신규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: 6시간
 - 보수교육 대상자
 - 축산업 허가자 : 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1년(6시간)
 - 축산업 등록자 :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(6시간)
 - 가축거래상인 :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(4시간)
- '20년 교육 미이수자 교육 기간 연장
 - 고령의 축산농가 정보화 기기 사용 어려움 등으로 '20년 교육 이수율 저조
 - '20년 교육 미이수 대상에 한해 '21.6.30.까지 기간 연장
- 수강방법 : www.farmedu.kr 접속 수강

| 과목명 | 교육기간 | 교육시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허가교육 및 등록교육 | 2022.06.15 ~ 2024.06.14 | 6시간 |
| 가축등록 및 관리 | 2022.06.15 ~ 2024.06.14 | 3시간 |
| 가축등록 및 관리 | 2022.06.15 ~ 2024.06.14 | 3시간 |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☎ 430-3613

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

가축의 질병·상해로 인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이용
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
□ 사업량 및 사업비

- 기 간 : 연중 수시접수 (※ 보험가입 후 1년간 보장)
- 사 업 량 : 소 8,600두(송아지, 비육우, 한우번식우, 젖소)
- 사 업 비 : 602백만 원(보조 451.575%, 자담 150.525%)
- 보험료 지원 : 보조 75%, 자담 25%

□ 보험가입

- 보 험 사 : NH농협손해보험(강진완도축협 ☎ 433-1511)
- 가입자격 : 소 9두이상 사육농가 → 축산업등록 필증
- 진료수의사 ※ 보험사(강진완도축협)와 가축질병치료보험 참여약정

현대동물병원 조종관 010-3609-7851 백제동물병원 김현장 010-3601-5636
강진동물병원 이경재 010-4645-5288 다산동물병원 강성철 010-3004-0157

- 가입형태 :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에 대해 농가당 전두수 가입
- 유의사항 : 1계약(증권)당 보장한도액(연간총액) 80만원 미만은 가입제한
→ 암소기준 9두이상되어야 보험가입 가능
- 1두당 보험료(농가 자부담)

- 한우송아지 25,180원, 육우송아지 7,550원, 비육우 5,100원
- 한우번식우(미출생 송아지 포함) 24,830원, 젖 소 41,200원

※ 개체상태 및 보험기준에 따라 보험가입료는 변경될 수 있음.

□ 전년도 보험가입 혜택(2020년)

- 보험가입 : 107농가, 소 3,329두 → 보험료 251백만 원(보조 188, 자담 63)
- 보험혜택 : 총 보험금 수령액 132백만 원(총 자부담의 2배 수령)
- 보험금 혜택받은 농가수 : 78농가(보험가입농가의 73%)
※ 농가 자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한 실적

| 구 분 | 계 | 혜택없음 | 50%이하 | 51~100% | 101~200% | 201~300% | 301~400% | 401~500% | 500%이상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농가수 | 107 | 29 | 13 | 14 | 19 | 7 | 7 | 6 | 12 |
| 비율(%) | 100% | 27% | 12% | 13% | 18% | 7% | 7% | 6% | 11% |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☎ 430-3241

한우 사육농가 출하 전 이행사항

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를 출하 하기전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,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를 받은 후 거래하여야 합니다.

□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

○ 접종시기

- 송아지 (10개월령 이하) : 1차(생후 2개월령) → 2차(1차 접종 30일 후)
- 모든 소(10개월령 초과) : 4 ~ 7개월 간격으로 접종
(매년 4월, 10월 전 두수 정기접종 실시)

○ 접종방법

- 소규모(50두 미만) : 접종반 또는 자가 접종 후 접종결과 제출 → 군
- 전업농(50두 이상) : 자가 접종 후 접종결과 제출 → 군
- ※ 접종결과서는 읍면을 통하여 공문으로 제출

□ 소 브루셀라병 검사

○ 출하전 검사 : 개인간 거래, 우시장,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

- ※ 거세 수소는 검사 불필요, 어미소와 동거중인 6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어미소 검사결과 적용, 어미소 부재 송아지는 7개월령 이상부터 검사 (어미소 검사 후 2개월 이내이면 검사 불필요)

○ 검사절차 : 검사신청(출하 21일전, 읍면)→신청서 제출(군)→채혈(채혈요원) →검사 및 결과 입력(동물위생시험소)

□ 소 결핵병 검사

○ 검사대상 : 개인거래 또는 우시장 출하 예정 12개월령 이상의 모든 소 ※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는 검사 불필요

○ 검사절차 : 검사신청(출하 21일전, 읍면)→신청서 제출(군)→채혈(채혈요원) →검사 및 결과 입력(동물위생시험소)

□ 참고사항

○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결과 유효기간 : 2개월

- 단, 도축장 출하시 검사일로부터 3개월
- 검사 후 2개월 미만이라도 소유자가 바뀔 경우 재검사 필요
- 축사 신축 등으로 사육장소가 바뀔 경우(이전)에도 반드시 검사 필요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☎ 430-3241

가축질병 예방백신 접종 철저

가축 사육농가는 구제역 및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백신 접종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
□ 구제역 예방접종

- 대상가축 : 우제류 가축(소, 돼지, 염소) * 사슴은 농가 자율접종
- 접종시기 :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실시
 - 소, 염소는 1년 중 2차례 일제접종(4월, 10월)
(새로 태어난 개체는 2개월령 또는 4개월령 1차, 1달후 2차접종)
 - 돼지는 새로 태어난 개체 2월령 1차 → 1달 후 2차 접종
(2차 접종 이후 6개월 마다 추가 접종)
- 백신 취급요령
 -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(2~8°C)로 보관
 - 한번 개봉한 백신은 즉시사용(상온 15~25°C에서 2~3시간 이내사용)
- 항체양성률 기준치(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)
 - 소 80%이상, 염소 60%이상, 돼지(번식) 60%이상, 돼지 30%이상
-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
 - 과태료 부과(1회 500만원, 2회 750만원, 3회 1,000만원)
 -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조치
 - 백신보조 감액(자담 50% 부담) → 2020. 7. 1.부터 시행

□ 돼지열병 예방접종

- 접종시기
 - 새끼돼지 : 생후 55~70일령 1회 접종, 단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(5~6주) 1차 접종, 생후 60일(8~9주)째에 2차 접종
 - 종돈 또는 번식돈 : 매년 1회 접종
 - 모돈 : 종부 2~4주(21일 전후)전에 1회 접종
- 항체양성률 기준치(10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) 80% 이상
- 기준치 미만 농가 : 과태료 부과(1회 200만원, 2회 400만원, 3회 1,000만원)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☎ 430-3242

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

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축산농가는 군에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(GPS)를 장착하여야 합니다.

□ 개 요

- 관련법규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
- 등록대상 :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(소유자 및 운전자)
 - * 축산관계시설 : 가축사육시설, 도축장, 사료공장, 가축시장 등
- 등록절차 : 신청인 → 군(환경축산과) 신청서 제출 → 등록증 교부
 - 등록신청서(차량등록증 사본) + GPS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
 - * GPS 통신료 : 월 9,900원 → 보조 50%, 자담 50%(4,950원)
- 교육이수 : 차량등록 3개월 전후(6시간) → 4년후 3개월내(4시간)

□ 위반시 벌칙(과태료)

-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(훼손, 고장방치, 전원끄기 등 포함) 차량 운행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벌칙 및 과태료 부과

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-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
-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한 운전자

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1회 위반 100, 2회위반 200, 3회 위반 500만원)

-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
-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
-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
-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

● 축산차량등록 및 GPS관련 문의전화 : 군 환경축산과(가축방역팀 ☎ 430-3243)

- 신청방법 : 차량등록증 사본 지참 → 군청(환경축산과) 방문 → 신청서 작성 제출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☎ 430-3243

시 정확히 알면 두렵지 않아요!

- ① **농장 내·외부를 매일 소독하고,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**
※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,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
- ② **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·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·착용**
- ③ **농장경계, 축사,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**
※ 팬 공간, 배수로,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
- ④ **축사·왕겨창고, 퇴비사 등에 야생조류·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 등 유입 차단 철저**
- ⑤ **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**
- ⑥ **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시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**
※ 쥐 등 야생동물이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시 바이러스 전파 가능
- ⑦ **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·소독 철저**
※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농장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
- ⑧ **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·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·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**
- ⑨ **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·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 자제**
- ⑩ **축주·종사자의 경작지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, 작업복 교체, 착용 신발·세척·소독 및 세안·손씻기 철저**

문의처 :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☎ 430-3244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

"**철저한 차단방역**과 **주기적인 소독**으로 예방합시다."



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

즉시 방역당국 ☎1588-4060, 1588-9060 에 신고



2

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
-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,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
- 농장·축사·사료·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,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

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

- 닭·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
-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

- 동물약품 운반차량·관계자 농장출입 금지, 농장주가 직접 구입·운반
- 가축운반차량(어리장차)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, 소독 철저
-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, 닭·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



4

일반인 농장출입 통제

- 농장 출입구에 「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」는 안내문 부착
-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,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



2021년 봄철 대형 산불예방 철저

『소각산불 제로화』 선포에 따른 불법 소각행위 전면 금지

- 소각산불 제로화의 원년 선포 산불 취약지역 집중 단속.
 - 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 및 제53조(벌칙)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
 -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 부과
 -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

- 논·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 증가.
 - 전남지역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168건 중 봄철 124건(73%) 차지
 - 산림 주변 불법소각(55건)과 입산자 실화(23건)로 부주의에 따른 산불 발생
 - 쓰레기 소각이 봄철 산불의 44% 차지 → 소각행위 집중 단속
 - 18시 퇴근 이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증가 → 연장 근무 실시(18시 → 20시)

- 과태료 부과항목(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)
 -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농산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
 - 산림 또는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
 -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 풍등이나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
 - 화기, 인화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

- 강진군 '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' 전 마을 참여.
 - 전 마을(293개소) 소각산불 금지 서약서 작성
 - 금지 서약서 준수사항에 「**공동소각 안하기**」항목 추가
 - 이장 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한 준수사항 전달 및 자발적인 참여 홍보

문의처 : 강진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 ☎ 430-3295

깨끗한 강진만 만들기 협조

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쓰레기 수거·처리 협조 요청

□ 해양쓰레기 발생원인

- **일반 해양폐기물**은 장마, 집중호우, 태풍 발생시 하천을 통한 생활 폐기물 유입과 관광객·낚시객들의 불법투기 등으로 발생
- **해조류·패류양식장**의 플라스틱과 채묘용 그물망, 페스티로폼, 굴 양식장의 패각 등이 주류
- **어선**에서는 어구·어망 보수와 정비 시 발생하는 폐그물 및 조업 중 인양되는 해양폐기물 재투기와 미수거 어구 등 발생
- 특히, **자연재해** 발생시 폐양식기자재, 육상의 하천에서 유입되는 각종 생활폐기물과 폐초목류 등 대량 발생

□ 협조사항

- 매달 셋째주 어촌계 자율 "연안정화의 날" 운영
 - 해양쓰레기, 생활쓰레기(패트병,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) 별도 분리
 - 적치 후 면사무소 산업팀이나 해양산림과 해양개발팀으로 연락하여 처리
- 어업활동 후 어구, 어망, 기자재 등 육상 보관시 정리 및 주변 청소
-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쓰레기, 폐어구 등은 선상집하장 활용
- 조업 중 발생한 쓰레기(통발, 어구, 어망 등)는 수협 "조업중 인양쓰레기 구매사업"을 통해 우선 처리

문의처 : 강진군 해양산림과 해양개발팀 ☎ 430-3264

낙시어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안내

거리두기 준수 ·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
□ 낙시어선 감염병 예방수칙

○ 대 상

- 낙시어선 선주, 승선원 및 낙시객

○ 준수사항

-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(턱스크 · 코스크 불가)

- 거리두기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(최소 1m 이상)
- 기침,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함
- 선내에 손소독제 비치 및 선내 소독 · 환기 철저
- 낙시 승객의 조치 거부 시 낙시어선 승선 거부
-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말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

○ 과태료의 부과기준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 | |
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1차 위반 | 2차 이상 위반 |
| 자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| 법 제83조제4항제1호 | 10 | 10 |

문의처 : 강진군 해양산림과 수산진흥팀 ☎ 430-3275

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안내

지적재조사사업이란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강진군 지적재조사지구 선정에 따른 안내

□ 2021년 강진군 지적재조사사업

- 사업대상 : 10개 지구(군동면 1, 대구면 3, 작천면 6) / 1,753필지
- 사업시행 : 강진군수(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)
- 사업지구 현황

| 읍면 | 사업지구 | 토지소재지 | 필지 수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계 | 10개 | | 1,753 |
| 군동 | 영포지구 | 호계리 831번지 일원 | 405 |
| 대구 | 용문지구 | 용운리 335-7번지 일원 | 76 |
| | 백사지구 | 사당리 514번지 일원 | 189 |
| | 계치지구 | 계율리 668-1번지 일원 | 244 |
| 작천 | 군자지구 | 군자리 232-1번지 일원 | 122 |
| | 작천부흥지구 | 야흥리 602-1번지 일원 | 196 |
| | 상당지구 | 삼당리 182-1번지 일원 | 97 |
| | 중당지구 | 삼당리 126번지 일원 | 237 |
| | 하당지구 | 삼당리 442번지 일원 | 116 |
| | 죽현지구 | 현산리 991-1번지 일원 | 71 |

□ 주민 협조사항

-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께서는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문의처 : 강진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☎ 430-3792~3

주소 정정 및 주소일괄변경 신청 안내

현재 생활하고 있는 원룸,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(동·층·호)가
주민등록표에 표기되지 않나요?

➔ 지금 바로 상세주소(동·층·호)가 포함된 주소로 정정에 보세요!

- 현재 선생님께서 생활하고 계신 건물에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있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
- 상세주소가 부여된 주소로 정정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에 동·층·호가 표기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 정정 예시

| 현행 | 정정 |
|----------------|--|
| 전라남도 강진군 탐진로 Ⅲ | 전라남도 강진군 탐진로 Ⅲ, 민원동 (현재와 같음) (동·층·호 추가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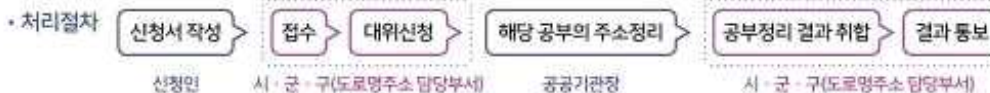
주소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?

➔ 정부24(주민등록표 등), 국세청 홈택스(사업자등록) 등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거나, 시·군·구청에서 주소 일괄변경을 신청(주민등록·사업자등록·건설기계등록·옥외광고사업등록 4종)하면 됩니다.

주소 일괄변경 신청요령

- 신청대상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에 주소를 둔 사람
-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(도로명 담당부서)에 주소일괄변경 신청서 제출

- 구비서류
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▶ 정정신고서
 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▶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
 -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▶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
 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 ▶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



주소 정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?

문의처 : 강진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☎ 430-3419

강진군 마을세무사 운영

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영세사업자, 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운영기간 : 연중

□ 운영내용

- 국세·지방세 세무상담,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
- 각종 지방세 구제관련 업무

※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

□ 이용방법

- 상담을 원하는 군민이 마을세무사에 직접 전화, 팩스, 이메일 및 방문하여 상담 실시

□ 우리 군 마을세무사

- 세무사명 : 청자골세무사 (대표 김홍식)
- 위치정보 : 강진군 강진읍 연지길 30 (관할세무서 : 해남세무서)
- 전화번호 : 061 - 432 - 2100
- 담당자 : 세무회계과 윤재광 주무관 (061-430-3463)

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알림

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·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

□ 운영기간 : 연중

□ 운영내용

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·심판청구 등 불복절차

□ 이용방법

- 지방세 불복관련 청구·신청시 세무회계과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제출
→ 신청요건 충족여부 검토 → 대리인 선정 (신청 7일 이내 통지)

□ 신청요건

-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(배우자 합산)
- 소유재산(부동산, 회원권, 승용차 등) 가액 5억원 이하 (시가표준액 기준)
- 청구·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
- 고액·상습 체납자 중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이 아닌 자

□ 문의전화

- 세무회계과 세정팀 (061-430-3463)

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

□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

- 대 상 : 만 50세 이상(71년 이전 출생자) 강진군민 ※ 기접종자 제외
(기존) 만 60세 이상 → (변경) 만 50세 이상
- 추진시기 : 연중
- 접종장소 : 보건소, 보건지소
- 접종비용 : 기초생활수급자 무료, 일반주민 75,000원

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안내

□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(다당질 23가) 예방접종 안내

- 대 상 : 만 65세 이상(56년 이전 출생자) ※ 기접종자 제외
- 접종장소 : 18개소(보건소 1, 보건지소 10, 위탁의료기관 7)
- 비 용 : 무료

※ 위탁의료기관 현황(7개소)

| 읍·면 | 의료기관명 | 전화번호 | 읍·면 | 의료기관명 | 전화번호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강진읍 | 강진아나파의원 | 432-9588 | 강진읍 | 성모의원 | 433-8275 |
| 강진읍 | 우리들내과의원 | 434-3223 | 마량면 | 마량의원 | 434-9933 |
| 강진읍 | 연세의원 | 433-9133 | 성전면 | 성전하나의원 | 434-8578 |
| 강진읍 | 오창근의원 | 430-7500 | ※ 총 7개소(강진읍 5, 마량면 1, 성전면 1) | | |

문의처 :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☎ 430-3595, 3577

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안내

- 신청기간 :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지원대상 : 21. 1. 1.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
 - 셋째아 지원받은 후 넷째아 출생시 가구당 중복 지원가능
- 신청장소 : 읍·면사무소 및 정부24(www.gov.kr)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- 지원내용 :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
 - 유모차, 신생아 의류, 수유용품, 목욕용품,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
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혼인상태의 난임부부
- 지원범위 : 난임 시술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, 일부본인부담금
- 지원금액 : 난임 시술비 1회당 20~110만원 차등 지원
- 지원횟수 : 최대 17회(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, 인공수정 5회)
- 신청장소 :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
 - ※ 추가지원 (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)
 - 도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횟수 (체외수정 12회, 인공 수정 5회) 종료자
 - 1회당 20~150만원 추가 지원 / 연 2회, 최대 2년

문의처 : 보건소 방문보건팀 ☎ 430-3562
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

- 신청기간 : 영아 출생 후~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다자녀 (2인 이상) 가구
 - ※ 조제분유 대상 : 산모가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아동 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한부모(부자·조손)가정 등
- 신청장소 : 보건소, 읍·면사무소, 복지포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지원내용
 - 기저귀 구매비용 : 월 64,000원 지원
 - 조제분유 구매비용 : 월 86,000원 지원
 - ※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

-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지원대상 : 강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
 - ※ 중복지원 제한 :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, 전남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
- 신청장소 : 보건소, 복지포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금액 일부 지급
 - ※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달라짐

문의처 : 보건소 방문보건팀 ☎ 430-3564

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안내

-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 거주하는 산모
 - 30%감면 : 일반가정
 - 70%감면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문화가족, 셋째아이상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, 5·18유공자, 귀농어·귀촌인
- 신청방법 : 산후조리원 이용 전 강진군 보건소에 방문신청
- 지원내용 :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%지원, 일반가정 30%감면

영양플러스 사업 안내

- 지원대상 : 임신부, 출산수유부, 66개월 이하 영유아
- 신청장소 : 보건소 방문보건팀 및 보건지소
- 지원내용 : 영양교육 및 상담, 보충식품 공급, 영양상태 평가
- 선정기준 :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중 소득수준 및 영양적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
 - 강진군 주민 중 임신부, 출산수유부, 66개월 이하 영유아
 - 기준 중위소득 80%미만 (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)
 -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 :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

문의처 : 보건소 방문보건팀 ☎ 430-3564

암 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안내

□ 국가 암 검진 안내 국가 암 검진 받아야 암 치료비 지원 가능

- 국가 6대암 :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
- 검진대상자 (검진주기 2년인 경우 홀수년도 출생자 해당)

| 암의 종류 | 검진대상 | 검진주기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위암 | 만 40세 이상 남·여 | 2년 |
| 간암 | 만 40세 이상의 남·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| 6개월 |
| 대장암 | 만 50세 이상 남·여 | 1년 |
| 유방암 | 만 40세 이상 여성 | 2년 |
| 자궁경부암 | 만 20세 이상 여성 | 2년 |
| 폐암 | 만 54~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남·여 | 2년 |

※ 국가암검진 기간연장

- '20년 미수검자(짝수년도 출생자)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6. 30.까지 기간 연장
- 신청방법 : 공단지사 및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

○ 검진기관별 검진항목

| 검진기관 | 위암 | 간암 | 대장암 | 유방암 | 자궁경부암 | 폐암 | 비고 |
|---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|----|----|
| 강진의료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× | |
| 오케이내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× | × | |
| 우리들내과 | ○ | ○ | ○ | ○ | × | × | |

□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

○ 국가 암 검진 받아야 암 치료비 지원 가능

| 구분 | 소아 암환자 | 의료급여 수급자 | 건강보험가입자 (국가암검진수검자) | 폐암 환자 | 비고 |
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|
| 선정 기준 | · 건강보험가입자 : 소득·재산조사 · 의료급여수급자 : 당연 선정 | 당연 선정 | · 국가암검진 수검자 · 1월 건강보험료 (직장 103,000원 이하, 지역 97,000원 이하) | · 건보 : 1월 건강보험료 · 의료급여수급자 : 당연 선정 | |
| 지원 암종 | 전체 암종 | 전체 암종 | 5대암 | 원발성 폐암(C33-C34) | |
| 지원 기간 |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| 연속 최대 3년 | 연속 최대 3년 | 연속 최대 3년 | |
| 지원 금액 | · 백혈병 : 3,000만원 · 백혈병 이외 : 2,000만원 (조혈모세포이식 시 3,000만원) *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|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| 급여 200만원 | - 건강보험가입자 :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이내 - 의료급여수급자 : ·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·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| |

문의처 : 보건소 의약관리팀 ☎ 430-3556

B형·C형 간염 무료 검진 안내

- 기 간 : '21. 3. 1. ~ '21. 3. 31.
- 대 상 : 373명(40세 이상 강진군민/간염 고위험군 우선선정)
 - 간염 고위험군 :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가족, 혈액제제 반복 투여 환자, 의료기관 종사자 등
- ※ 제외대상 : 간암검진 대상자, 작년 B형·C형 간염검진 대상자
- 검진항목 : B형(항원, 항체)·C형(항체) 간염 검사
- 신청접수 : 소재지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방문
- 검진방법 : 보건소 및 보건지(진료)소 내소 채혈

문의처 : 보건소 의약관리팀 ☎ 430-3556

마을회관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

- 장 소 : 마을회관 293개소
- 운영방식 : 마을회관에 폐의약품 수거함(가방)을 비치하여 자율적 폐의약품 수거
- 수거방식 : 각 마을 이장님이 읍·면사무소 방문 시 읍면사무소 폐의약품 수거함에 수거

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안내

○ 연 령 : 만 60세 이상

○ 대 상 : 백내장, 망막증, 녹내장,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

(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)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
○ 지원범위 :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지원기준 및 상한액 지침에 의함)

○ 구비서류 : 해당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), 지원신청서,

안과진단서(진료소견서), 주민등록등본

-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

○ 신청접수 : 보건소, 보건지소

○ 지원절차 : 신청서 접수 후 재단에서 지원결정 개별 통보

※ 접수에서 지원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(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)

※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문의처 : 보건소 방문보건팀 ☎ 430-3564

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

- 연 령 : 만 60세 이상
 - 대 상 : 인공관절 치환술(슬관절)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 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 - 지원범위 :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(법정본인부담금에 한정)
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(한쪽 무릎 기준)
 - 구비서류 : 해당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),
지원신청서,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
 -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
 - 신청접수 : 보건소, 보건지소
 - 지원절차 :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
- ※ 접수에서 지원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(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)
- ※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문의처 : 보건소 방문보건팀 ☎ 430-3564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홍보 협조



더불어 행복한 강진
군민이 주인입니다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예방 함께 지켜주세요

코로나 19 위기극복 우리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

01



실내에서
마스크 착용하기

02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
30초이상 손씻기

03



다른 사람과
2M 거리두기

04



매일 두번이상
환기, 소독하기



강진군보건소

무료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안내

-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- 사업대상 : 개인, 사회복지시설,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등), 사회봉사단체 등
 - (개인) : 집주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
 - (사회봉사단체) : 도움이 필요한 마을,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시 주변 환경.위생 정화활동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
 - (사회복지시설, 기관 단체) : 자체건물 및 주변 오염지역 등 위생.환경 정화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
- 사업내용 : 방역소독이 필요한 개인, 단체, 사회복지시설 등에 **무상으로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와 방역약품 지원**
 - 대여기간 : 5일(휴일포함)
 - 대여장소 : 보건소 방역 창고 앞
- 신청 및 처리절차
 - 신청기간 : 1월 ~ 12월
 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
 - 제출서류(현장작성) : 신청서, 신분증사본,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
문의처 :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☎ 430-3555

저소득층 교육급여 · 교육비 신청하세요!

(자료제공: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☎ 044-203-6524, 6946)

보다 나은 정부

2021년도 초·중고 학생 교육급여 ·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!!

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

우리 아이 교육비
고민 해결

집중 신청기간

2021년 3월 2일 (화) ~ 3월 19일 (금)

※ 연중 신청 가능하나,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

지원 대상

교육급여
국민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
교육비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
법정차상위 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교육급여
(초·중·고)교육활동지원비, (고)교과서대금,
입학금 및 수업료(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)
교육비
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
교육 정보화지원(PC, 인터넷통신비),
고교 학비(입학금 및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등

신청 방법

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
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 신청
• 복지포(www.bol@iro.go.kr)
• 교육비 원클릭(www.oneclick.moe.go.kr)
※ 학부도 공통인증서 필수

제출 서류

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※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보강가구 학생과
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
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

문의처

보건복지 상담센터 ☎ 129
교육비 중앙상담센터 ☎ 1544-9654
읍면동 주민센터, 학교 및 교육청

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

(자료제공: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☎ 044-203-6290,6227,6269)

정부는 학생·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.
대학 신·편입생과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국가장학금으로 **장**한 꿈을 더 빛나게

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꿈을 응원합니다



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, 잊지 말고 2020.3.16.(화)까지 신청하세요.

신청기간 2021.2.3.(월) 09:00 ~ 3.16.(화) 18:00 / 42일간

신청대상 신·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
※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, 재학기간 중 2회까지 2차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

1 학생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,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
▶ 학생 공동인증서 필요



2 가구원(부모 등)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kosaf.go.kr) 접속 후, 소득심사를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
▶ 가구원 공동인증서 필요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
www.kosaf.go.kr

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



Android



iOS

지원내용

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액

| 구분 | 기초·차상위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I 유형 | | 520만원 | | | 390만원 | 368만원 | | 120만원 | 67.5만원 |
| 다자녀 | | 520만원 | | | 450만원 | | | | |

- ※ 1)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·재산·부채에 대한 자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
- 2) 성적,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(신입생은 성적요건 제외)

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☎1599-2000, 홈페이지 www.kosaf.go.kr

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

(자료제공: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☎ 02-2100-4077)

- 오는 3월 1일은 제102주년 3·1절입니다.
 -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.
- 가정에서는 3. 1.(월) 07:00부터 18: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.
 - ※ 태극기는 「대한민국 국기법」 제8조에 따라 매일·24시간 게양 가능
- 심한 비.바람(악천후)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.

《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》

-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.
 - ※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,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
 - ※ 자녀와 함께 달 경우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
 - ※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

《 태극기의 구입 》

-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(시.군.구청 및 읍.면.동 주민센터 등),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,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오염.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,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
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!

(자료제공: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☎ 044-205-6632~6)

- 신청대상 :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·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※ 보이스피싱, 신분도용, 가정폭력 등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제출서류 :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(우려)를 입증하는 자료
※ 판결문, 사건사고사실확인원,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



에너지바우처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!

(자료제공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☎ 044-203-5252)

-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작년 여름부터 겨울, 그리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“2020 에너지 바우처”는 2021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가능하오니 잔액이 남은 분은 지금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 - * 요금차감은 4월내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, 국민행복카드는 4월내 카드결제 완료 필요
 - 이사 등으로 바우처가 중지되었거나 사용방법을 바꾸고자 하시는 분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.
 - 요금차감 : 아파트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) 거주자, 편리한 사용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추천 *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고객번호 등) 필요
 -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추천
 - * 읍면동 신청 후, 대상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은행 등에서 직접 발급 / 기존 카드 사용가능
 - ** 등유, LPG, 연탄 : 가맹점에서 구입 / 전기, 도시가스 : 영업소에 문의하여 결제
-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| 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이상 가구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총 지원금액 | 95,000원 | 134,000원 | 167,000원 |

- *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모두 포함한 총 지원금액이며, 월별 지원금액 아님
-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,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)이며, 신청여부 확인 및 사용방법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‘에너지바우처’를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.



문 의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☎1600-3190 홈페이지 www.energyv.or.kr

반듯한 경계! 반듯한 나의 땅! 지적재조사사업!

(자료제공: 토지관리과 ☎ 061-286-7651)

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
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경계에 맞춰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시키는 사업입니다.

2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?

- 1)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합니다.
- 2) 맹지(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)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축이 가능한 등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.
- 3) 측량비, 등기비, 취득세가 무료이므로 개인 비용이 절약됩니다. 다만,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납부 또는 수령 해야 합니다.



3 우리 동네 지적재조사사업 신청은?

- 1)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 총수의 2/3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2) 또한 내 토지가 사업지역인지 궁금하시면, 해당 시·군 민원실에 문의하시면

도민 안전보험 안내

(자료제공: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☎ 061-286-3221)

□ 사업개요

- (추진기간) 2021. 2. 1. ~ 2022. 1. 31.(매년 갱신)
- (가입대상) 2021년 1월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(가입주체) 시장·군수(도민 개개인 가입 신청 불필요/전 도민 자동가입)
- (사 업 비) 1,000백만원(도비 30%, 시군비 70%)
- (보장기간) 가입일로부터 1년(매년 갱신)
- (보장금액) 자연재해 등 사망 1,000만원, 상해후유장애 1,000만원 한도
- (중복보장) 국내에서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

□ 보장내역

- 보험가입항목 : 11항목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자연재해사망(일사·열사 포함) | ② 익사사고 사망 |
| ③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사망 | ④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후유장애 |
|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|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|
| ⑦ 강도 상해사망 | ⑧ 강도 상해후유장애 |
| ⑨ 농기계 상해사망 |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|
|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| |

※ 11개 항목 외 보장항목, 보장금액은 시·군별로 상이(사고발생시 시·군 문의)

□ 공제·보험금 지급절차

- (사고신고) 도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시·군 또는 보험사(공제회)에 신고
- (보험사 통지) 시·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(공제회) 통지
- (사고조사) 보험사(공제회)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
- (보험금 지급) 보험사(공제회)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

도민 안전공제·보험 관련 시군 전화번호

| 시군 | 부서명 | 전화번호(061) | 비 고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목포시 | 안전총괄과 | 270-3651 | |
| 여수시 | 재난안전과 | 659-3236 | |
| 순천시 | 안전총괄과 | 749-5664 | |
| 나주시 | 안전재난과 | 339-7293 | |
| 광양시 | 안전총괄과 | 797-2558 | |
| 담양군 | 안전건설과 | 380-3343 | |
| 곡성군 | 안전건설과 | 360-8613 | |
| 구례군 | 안전도시과 | 780-2741 | |
| 고흥군 | 재난안전과 | 830-5842 | |
| 보성군 | 안전건설과 | 850-5562 | |
| 화순군 | 재난안전과 | 379-3779 | |
| 장흥군 | 재난안전과 | 860-6174 | |
| 강진군 | 안전재난교통과 | 430-3924 | |
| 해남군 | 안전도시과 | 530-5825 | |
| 영암군 | 안전건설과 | 470-2139 | |
| 무안군 | 안전총괄과 | 450-5813 | |
| 함평군 | 안전건설과 | 320-1993 | |
| 영광군 | 안전관리과 | 350-5448 | |
| 장성군 | 안전건설과 | 390-7119 | |
| 완도군 | 안전건설과 | 550-5762 | |
| 진도군 | 안전생활지원과 | 540-6865 | |
| 신안군 | 안전건설과 | 240-8905 | |